

유가증권 상장규정 세칙 / 개정내용

● 개정이유

—상장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그밖에 업종변경시기 단축 및 업종변경법인의 소속부 심사, 사고증권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개선함으로써 상장유가증권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주요골자

1. 종합금융회사의 채권상장 신청서류를 간소화함.
(제1조의 2)

—건양 및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 사본만 첨부

2. 업종변경시기를 단축하여 시장소속부 변경시기와 일치시킴.(제4조 제4항 및 제5항)

—결산기 이후 6월 최초매매일 → 5월 최초매매일

3. 중소기업에 대한 별도의 주권신규상장 심사요건을 규정함.(제5조의 2)

—설립후 경과년수 : 10년 이상

—기업어음 신용평가 등급 : 2등급 이상

—순자산 : 총자산의 25/100 이상

4. 업종변경법인에 대한 소속부 심사시 업종적용기준 마련(제7조 제7항)

—업종변경법인의 적용업종은 변경전 사업년도부터 3사업년도 동안 변경전 업종과 변경후 업종중 유리한 업종으로 함.

5. 유가증권발행인에 대하여 사고증권 통지의무 부여
(제8조 제2)

—대체결제회사에 문서로 통보

현	행	개	정	개	정	이	유
(신	설)	제1조의 2(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정부의 영업	감독을 받는법인의범위)규정 제5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거래소가 따로 정하	는 법인은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로 한다.	
제4조(업종분류 기준 등) ①~③ (생	략)	제4조(업종분류 기준 등) ①~③ (현행과 같	음)	④		5월	
④ 상장법인의 업종변경시기는 결산기	를 포함한 월의 익월부터 기산하여 6월	이 되는 월의 최초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로 한다. 다만, 제3항 제1	호,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당해 사	실이 확인된 때 변경한다.		
⑤ 상장법인은 업종분류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보고서 제출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	
(신	설)	제5조의 2(중소기업의 주권신규상장 심사요	건) 규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	소기업의 주권신규상장 심사요건은 다			

현	행	개	정	개 정 이 유
		음 각호와 같다. 다만, 중소기업 등의 주식장외거래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장외거래등록주권을 발행한 법인으로서 등록 후 1사업년도 이상 경과한 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
		1. 설립후 10년 이상 경과할 것. 2.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인수심사청구서 제출예정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말 현재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등급 이상일 것. 3. 최근사업년도말 현재의 순자산이 총자산의 100분의 25 이상일 것. 다만, 금융업, 보험업 및 리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순자산의 계산은 공모주식의 인수가액 결정에 관한 기준 제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건설업 영위법인의 주권신규상장 심사요건)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규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6조(건설업 영위법인의 주권신규상장 심사요건)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규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6조(건설업 영위법인의 주권신규상장 심사요건) 규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권신규상장 심사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자구 수정
1~5 (생략)	1~5 (생략)	1~5 (현행과 같음)		
제7조(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의 계산 등)	제7조(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의 계산 등)	제7조(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의 계산 등)		
①~⑥ (생략)	①~⑥ (생략)	①~⑥ (현행과 같음)		
(신설)	(신설)	⑦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종이 변경되는 법인의 경우 시장소속부 심사시에 적용할 심사대상기간중의 당해 법인의 업종은 업종변경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부터 3사업년도 동안에는 변경전 업종과 변경후 업종중 당해법인에 유리한 업종으로 한다.		-업종 변경법인에 대한 소속부심사시 업종적용기준 마련
(신설)	(신설)	제8조의 2(사고증권) 상장유가증권의 발행인은 사고증권(분실, 도난 또는 멸실 등의 사유로 그 점유를 상실하였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유가증권을 말한다)에 관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		-사고 신고증권의 내용을 대체결제 회사에 통보토록 함.

현	행	개	정	개	정	이	유
		이 한국증권대체결제주식회사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발행인이 명의개서 대행기관과 명의개서 대행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해 명의개서 대행기관을 통하여 통보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199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장외거래등록기간 산정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세칙 시행 당시 이미 주권을 장외거래 등록한 법인의 경우 그 장외거래 등록기간은 제5조의 2 단서의 장외거래등록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③ (중소기업의 주권신규상장 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1992년 7월 11일에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1992년 7월 11일 현재 감리가 종료된 법인에 대하여는 1992년 7월 11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말까지 위원회에 기업공개를 위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제5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적용특례) 이 세칙 시행전에 업종이 변경된 법인에 대하여도 제7조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